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 2. 16 선고 2021가단319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래, 담당변호사 박은태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정지은

피 고 B

소송대리인 C

변 론 종 결 2022. 1. 26.

판 결 선 고 2022. 2. 16.

주 문

1.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이에 2020. 8. 25.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는 C에게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 9. 11. 접수 제6383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차전275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1. 25. 위 법원으로부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14,205,367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2015. 10.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 정본은 C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나. C의 아버지 D은 2020. 8. 25. 사망하였고, D의 배우자인 피고(상속지분 3/7), D의 자녀인 C(상속지분 2/7) 및 E의 배우자 및 자녀들은 2020. 8. 25. 상속재산인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받기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협의’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20. 9. 11. 이 사건 협의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협의 당시 C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상속지분 이외에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지 아니하였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이 법원의 평택시청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의 C에 대한 위 양수금 채권은 이 사건 협의 이전부터 존재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채무자의 사해의사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C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이 사건 협의를 함으로써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 C의 사해의사는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 중 C의 상속지분인 2/7 지분에 관하여 C와 피고 사이에 2020. 8. 25. 체결된 이 사건 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상속지분인 2/7 지분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영진

